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6. 12. 26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2회 정기회

. 제8차 내무위원회(1996. 12. 2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. 제9차 내무위원회(1996. 12. 26)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이유

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위임조례의 관장부서 재분류 및 위임체제를 재정비하여 전면개정
- 관계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른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

- 기존 위임된 사무중 업무성격상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환원
- 도지사 권한 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무 신규위임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창환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본 조례의 제2조 제목을 "(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)" 을 "(권한 위임 및 위탁사항)" 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·위탁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, 제5조의 제목을 "(위임 및 책임의 표시)" 를 "(위임처리 금지)" 로 하고 "소속 직원에게 위임 하여 전결하게 하거나" 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
- 준용 규정에 있어서 "권한의" 를 "행정권한의" 로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에 " (인용부)를 붙이도록 하였고
- 권한 위임사무중 별표1은 도지사의 권한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별표2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, 별표3은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이며, 별표4는 민간위탁사무로 전면 개정하였고, 별표5는 산업단지 관리 권한 위임·위탁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과 자치단체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권영관의원(질) : 도지사 권한위임 사무중 시장·군수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를 도로다시 환원 시키는 이유는?
- 내무국장(답) : - 허가권한과 자격정지 및 변경, 자격증 재교부 사항 등의 업무권한을 일차시키고
- 도내 지역적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사무를 환원시키는 것이며
- 업무처리 기관과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기관을 통일 시키고자 환원하는 것입니다.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인원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